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재해 정의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 포함〉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90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31.
3. 회부연월일 :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에 따라 최근 빈번해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損壞)와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경주와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규모 시설피해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전기설비 피해를 전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재해의 정의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 -----또는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損壞) 등으로-----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기설비가 손괴되어

1)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 10. (생 략)

그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5년간 규모별 지진 발생 현황]

연도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총횟수
2020	63	5	0	0	68
2021	65	3	2	0	70
2022	69	7	1	0	77
2023	90	14	2	0	106
2024	80	6	1	0	87
2025	75	4	0	0	79

출처: 기상청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w/eqk-vol/archive/stat/trend.do>)

이에, 개정안은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를 전기재해의 정의에 포함하며,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그러나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결함이나 사용·관리 등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누전, 합선 등)에 의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검사나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²⁾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는 자연재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외부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라는 점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재해와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음.³⁾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⁴⁾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⁵⁾은 “지진재해”를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

2)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전기설비는 건물 내부에 설치(배선 등)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시 건물 피해와 별도로 전기설비 손괴로 인한 피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여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면서, 지진의 예방·대비·대응 및 내진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과 제도 운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재난 관련 법령 간 중복으로 인해 재난관리기관과의 대응체계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참고: 최근 5년간 전기재해 발생현황]

□ (전기화재) 5년 평균 전기화재 발생은 8,543건으로 총 화재의 22.3% 차지

구분	총 화재(건)	전기화재(건)	점유율(%)	전기화재 인명피해 (사망/부상, 명)
2020	38,659	8,170	21.1	38/341
2021	36,267	8,241	22.7	42/264
2022	40,114	8,802	21.9	47/379
2023	38,857	8,871	22.8	45/336
2024	37,610	8,634	22.9	40/332
평균	38,301	8,543	22.3	42.4/330.4

자료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 (감전사고) 5년 평균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400.6명(사망 20.8명, 부상 379.8명)

구분	감전사고 합계(명)	사망(명)	부상(명)
2020	408	13	395
2021	412	24	388
2022	405	18	387
2023	407	21	386
2024	371	28	343
평균	400.6	20.8	379.8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집